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9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조인철 · 김 현 · 주철현
박희승 · 안도걸 · 양부남
고민정 · 정준호 · 이건태
신장식 · 김동아 · 최혁진
민형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 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4조의2제6항 단서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 내에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64조의2제1항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의무위반행위는 이 법 시행 이후의 의무위반행위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64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⑤ (생 략)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⑥ ----- ----- ----- ----- --. <u>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로 3년 내에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지 아니한다.</u>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